

감사청구심의회 회의록

2012. 7

감 사 관
(민원조사담당관)

「감사청구심의회」 회의록

〈회의개요〉

- ◆ 일 시 : 2012. 7. 24(화) 11:00~12:00
- ◆ 장 소 : 시청별관 5동 5층 여유당
- ◆ 참 석 : 8명(2명 불참)
 - 정00, 임00, 박00, 최00, 정00, 정00, 황00, 황00
 - 간사(민원조사담당관)
- ◆ 안 건 : 2건
 - 양천구 목마작은도서관 용도폐지 및 매각계획 관련 주민감사청구의 건
 - 구로구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관련 주민감사청구의 건
- ◆ 심의결과
 - 2건 모두 감사 “수리”

위원 발언 내용

〈간사〉

- 재적위원 10명중 7명이 참석하여 과반수가 넘어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리며, 000위원님과 000 위원님은 다른 일정관련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으며, 000위원님은 조금 늦는다는 연락이 있었습니다.

〈위원장 000〉

- 감사청구심의회를 개최하겠습니다. 우선 구로구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관련 주민감사 청구심사 안건을

상정하겠습니다. 간사는 안건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.

〈간사 민원조사담당관〉

- 구로구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관련 주민감사 청구
안건설명

〈위원장 000〉

- 수고하셨습니다.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의 의견을 말씀해
주시기 바랍니다.

〈000 위원〉

- 상기 안건 설명 내용중 2년 이상된 사안에 대하여는
주민감사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였는데, 중간에
정보공개관련 소송 등도 있었고 하여 청구인이 청구를 늦게한
사유가 있는 경우 제척기간에 변동은 있는 것인지?

〈부위원장 000〉

- 주민감사 대상에 적정한 시효중단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할
수 있는 보완책이 있었으면 좋겠다.

〈위원장 000〉

- 적절한 지적 같습니다. 민사, 형사소송에도 소멸, 공소시효중단에
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러한 규정에 지방자치법에 들어왔으면
하구요 그런 규정이 없다면 2년이 경과한 사안에 대하여는
감사대상이 아닌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.

〈000 위원〉

- 위원님들의 적절한 지적사항을 고려하여 2년 이내의 청구내용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하고 2년이 지난 사안이 연관되거나 불가피한 경우 경우 직권감사 등을 고려하여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.

〈000 위원〉

- 청구내용중 예산을 집행하면서 영수증이 없거나 누구에게 주었는지 알 수 없다는 내용이 있는데 요즘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.

〈000 위원〉

- 과거에는 특수활동비라든가 하는게 있어서 단체장들이 관행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.

〈간사 민원조사담당관〉

- 구청장 활동비 등이 그렇고 일반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, 심의통과되면 주민감사를 통하여 확인할 예정입니다.

〈000 위원〉

- 청구한 내용중에서 예산이 얼마인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.

〈간사 민원조사담당관〉

- 심의자료에 일부 있지만 감사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.

〈위원장 000〉

- 다른 의견이 없으면, 2010년 청구내용에 대하여 감사를

실시하고 2008년, 2009년 청구내용은 시민감사옴부즈만의 직권감사 권한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하고, 이 안건에 대하여 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.

〈위원장 000〉

- 그럼 다음 안건인 양천구 목마작은도서관 용도폐지 및 매각계획 관련 주민감사 청구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. 간사는 안건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.

〈간사 민원조사담당관〉

- 양천구 목마작은도서관 용도폐지 및 매각계획 관련 주민감사 청구 안건설명

〈위원장 000〉

-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〈박래학 위원〉

- 그러니까 도서관을 매각해서 종합청사를 짓고 싶어 하는 거지요

〈간사 민원조사담당관〉

- 설명드린 바와 같이, 청구인 주장은 현재 활발히 활용하고 있는 도서관을 왜 용도폐지하고 새로 짓느냐고 반발하며 양천구청의 위법 부당한 사항을 확인해서 조치해달라는 청구사항입니다.

〈000 위원〉

- 좀 이해가 안가는데 ... 2008년에 동청사를 통폐합하면서

목5동청사를 도서관으로 용도변경 공사했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한시적으로 사용하려고 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.

〈간사 민원조사담당관〉

- 구청측에서는 현재 목마작은도서관(구 목5동청사)를 매각해서 더 큰 청사를 짓고 그내부에 도서관을 이전하겠다는 거구요. 청구인은 잘 활용하고 있는 도서관을 왜 폐지하려는 건지 그 위법성을 감사해달라는 내용입니다.

〈000 위원〉

- 이런 내용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인데, 동청사를 통합하면서 기존의 청사를 매각하여 좋은 활용방법을 찾고 싶은데 주민들은 또 그렇지 않고 반대하고 그런일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구정을 폐가는데 있어서 많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.

〈000 위원〉

- 매각금액은 얼마정도 되며, 매각금액이 구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나요

〈000 위원〉

-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매각해서 큰청사를 지어 활용도를 높이는 것도 좋은 방안으로 보입니다

〈부위원장 000〉

- 이것을 매각하느냐 아니냐는 자치구의 효율성과 관련이고 청구내용은 목마작은도서관의 매각과 관련된 것 보다는

용도폐지의 위법성여부가 중점인 것으로 보여지며, 청구내용 자체는 주민감사 실시하는데 어떠한 결격사유도 없으므로 감사하는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.

<000 위원>

- 동민들 입장에서는 놔두는게 좋고, 구전체를 봐서는 매각해서 유용하게 활용하는게 좋은 것으로 보여집니다.

<000 위원>

- 감사청구심의회에서 청구내용의 실체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구요건에 해당이 되면 기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.

<000 위원>

- 저희가 심의회에서 어려움이 있는게 저의 심의는 기각할 수는 없고 각하나 수리를 해야 합니다.

<부위원장 000>

- 청구내용 자체는 감사청구 요건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으므로 각하는 어려울 것입니다.

<000 위원>

- 감사청구에 반대하는 사람(매각하자)이 천여명이 넘는 것같은데 이런 것은 반영되어야하는 것이 아닌가요

<간사 민원조사담당관>

- 반대의견은 참고만 할 뿐이고 심의를 구속할 사항은 아닙니다

〈000 위원〉

- 시민감사옴부즈만이 나가서 감사를 실시하면서 판단할 사항으로 어느쪽이 옳다 그르다고 현재 이야기 하기는 어렵습니다

〈위원장 000〉

- 그럼 더 이상의 의견이 없으면 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.
이상으로 제3차 감사청구심의회를 마치겠습니다.
위원 여러분, 수고 많으셨습니다.